2022년 근로능력평가직 공개채용 필기시험 교재

NPS 국민연금공단

청렴한 국민연금,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목 차

제1장. 근로능력판정제도 개요 ····· 1
1-1. 근로능력판정제도 개요 ····· 2
1-2. 사업 추진 경과 ····· 4
1-3. 주요 변경 내용 ····· 5

제2장.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8
2-1.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9
2-2. 의학적 평가기준(제8조 제4항) ····· 15
2-3. 활동능력 평가기준(제10조 제4항) ····· 19

제3장. 근로능력판정 ····· 22
3-1. 근로능력판정 대상 ····· 26
3-2.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 29

제4장. 근로능력평가 ····· 55
4-1. 근로능력평가 개요 ····· 56
4-2. 의학적 평가 ····· 57
4-3. 활동능력 평가 ····· 62

제5장. 근로능력평가 지원제도 ····· 67
5-1. 동행서비스 ····· 68
5-2. 평가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 70
5-3. 자료보완 비용지원 서비스 ····· 72

제 1 장

근로능력판정제도 개요

1-1. 근로능력판정제도 개요

1-2. 사업 추진 경과

1-3. 주요 변경 내용

1-1 근로능력판정제도 개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5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근로능력 재판정 신청)

-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음
  -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를 통해 자활기회를 제공
- 기초수급자 및 수급권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①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 4. 20.>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2.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3. 삭제 <2011. 12. 30.>
4. 삭제 <2011. 12. 30.>
5.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2., 2015. 4. 20.>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판정(再判定)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2., 2015. 4. 20.>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근로능력 재판정 신청)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 판정에 대한 재판정(再判定)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근로능력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4. 20., 2019. 10. 23.>
1. 진료기록부 사본
2.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정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판정을 다시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5. 4. 20., 2019. 10. 23.>
③ 제2항에 따른 재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법 제38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1-2 사업 추진 경과

- 1961. 생활보호법 제정
- 1999. 9.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 2000.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자활사업 실시
- 2010.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근로능력평가 근거 마련)
- 2010. 1. 1.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 2010. 3. 1.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1차 개정
  (평가기준에 없는 질환에 대한 평가근거 마련, 활동능력 평가 용어 보완)
- 2011. 1. 1.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2차 개정
  (협력병원 근거, 의학적 평가 기준 개선, 중앙근로능력심사위원회 기능 확대)
- 2012. 6.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
  (근로능력평가 국민연금공단 의뢰 근거 마련)
- 2012.12. 1.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3차 개정
  (근로능력평가 국민연금공단에 의뢰, 의학적 평가 기준 개선 및 활동능력 평가 세분화)
- 2012.12. 1. 근로능력평가사업 국민연금공단 위탁
- 2014. 3.19.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4차 개정
  (고착 대상 확대 및 유효기간 연장, 장애판정 기준 및 실질적 임상증상 등을 고려한 의학적평가 기준 개선)
- 2015. 4.17.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5차 개정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고착 질환으로 인정, 활동능력 평가기준 개선)
- 2016. 6.10.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6차 개정
  (근로능력판정의 유효기간 등 개선)
- 2020.1. 13.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7차 개정
  (의학적 평가기준 개선 및 활동능력 평가기준 개선)
- 2021.12. 31.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8차 개정
  (영구고착질환 신설, 등록장애인 중 요건 충족자 구비서류 생략 등 개선)

1-3 주요 변경 내용

1 2022년 근로능력평가제도 개선 요약

(1) 호전가능성 없는 영구고착 질환에 대한 의학적 평가 생략('22.12.1.)

- (영구고착 질환) 고착 질환 중 의학적 상태가 영구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의학적 평가를 통해 인정 받은 질환

  ① 절단, ② 변형, ③ 다리길이 차이, ④ 인공관절 치환술, ⑤ 척추고정, ⑥ 척추변형, ⑦ 무안구증·각막문신, ⑧ 장기이식, ⑨ 위루·장루·요루, ⑩ 전절제술

- 공단이 '영구고착 질환'으로 인정한 경우 다음 평가부터 의학적 평가 생략
- 직전 의학적 평가 결과가 영구고착 질환만으로 3~4단계인 경우에는 근로능력평가를 유예하고, 직전 평가와 동일하게 유효기간을 설정

(2) 공단의 장애인등록 심사자료를 활용한 의학적 평가 실시('22.3.1.)

-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국민연금공단 심사 이력이 있는 기초수급(권)자
- 등록 장애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는 대상자는 본인이 동의할 경우 '근로능력평가 신청서'만으로 평가 신청 가능

(3) 평가 유예가 가능한 '질환 유형에 상응하는 등록장애 유형'을 추가·보완('22.1.4.)

- 근골격계 및 감각기능계의 질환유형과 상응하는 장애인등록 장애유형을 세분화
- 신경기능계, 정신신경계, 감각기능계, 소화기계의 질환유형과 상응하는 장애인등록 장애유형에 '기능','언어','정신','장루·요루' 추가

근로능력평가 질환유형	장애인등록 장애 유형	
	현행	개정
신경기능계	뇌병변, 뇌전증	뇌병변장애, 뇌전증장애, 기능장애, 언어장애
정신신경계	–	정신장애
감각기능계	시각, 청각	시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소화기계	간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4)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 체계 간소화('22.1.4.)

-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을 평가 신청 유형(신규평가·정기평가·재평가·직권평가)이 아닌, 질환의 경중(호전 가능성 여부, 의학적 평가 단계)만으로 결정되도록 개선

<근로능력평가 판정 유효기간 개선 전후 비교>

신청 유형	호전가능성	의학적 단계	판정 유효기간
정기평가	고착	1단계	2년
		2~4단계	3년
	비고착	1단계	1년
		2~4단계	2년
그 외 (신규, 직권, 재평가)	고착	1~4단계	2년
	비고착	1~3단계	1년
		4단계	2년

※ 현행 [ ], 개선 [ ]

(5) 기존 장애4급 기초수급자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평가 실시('22.7.1.)

- (평가 대상) 기존 장애4급 평가유예('19.7.1.~ '22.6.30.) 대상자
- (평가 기준) 공단 장애인등록심사 이력 여부에 따라 평가

※ '11.4월 이후 공단의 장애인등록심사 이력이 있는 수급자는 3년 단위로 평가유예(장애 변동

없으면 계속 연장)하되, 장애판정 결과 심한 장애인 경우 평가 제외, 이력장애(미해당, 결정보류, 확인불가 등 장애가 아닌 상태)인 경우는 신규평가 대상

※ 공단의 장애인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수급자(과거 지자체에서 등록한 장애4급 수급자)의 경우는 신규평가 대상

(6) 자료보완 비용지원 서비스의 타인 명의 계좌를 '주민센터 계좌'까지 확대('21.7.)

- 미성년자 또는 신용불량자인 경우 '가족명의 계좌'로 한정했던 타인명의 계좌 범위를 '**가족명의 계좌 및 주민센터 계좌**' 로 확대

제 2 장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2-1.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2-2. 의학적 평가기준(제8조 제4항)

2-3. 활동능력 평가기준(제10조 제4항)

2-1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43호 (2009.12.3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34호 (2010. 3. 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34호 (2011. 1. 1.)
전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1호 (2012.11.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41호 (2014. 3.1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62호 (2015. 4.1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89호 (2016. 6.1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9호 (2020. 1.1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2호 (2021. 1. 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363호 (2021.12.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학적 평가"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사본 등을 검토하여 별표 1의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질환별로 단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활동능력 평가"란 공단이 평가대상자에 대한 면담 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별표 2의 활동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능력 간이평가"란 별표 2의 활동능력 평가항목 중 중요한 신체능력 및 인

지능력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의학적 평가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이란 제1호의 의학적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자문을 구하기 위해 공단에서 위촉한 의사 또는 한의사를 말한다.
5. "고착"이란 질병이나 부상의 의학적 상태가 2년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영구고착"이란 특정 고착질환의 의학적 상태가 영구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영구고착 질환"이란 영구고착으로 의학적 평가를 받은 질환을 말한다.

제4조(평가 신청) ①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평가대상자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등 의학적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다.

1. 영구고착 질환으로 근로능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근로능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등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상태의 확인 등 평가를 위하여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평가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평가대상자가 2회 이상 자료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제5조(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등) ①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는 별표 1의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외에 자신이 진료한 것에 대한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 관련서류의 발급을 요구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평가 의뢰 및 취소) ① 제4조에 따라 서류를 제출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득·재산 확인이 끝나는 대로 공단에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기 위한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공단에 평가의뢰 중 평가대상자가 사망, 수급자격 상실, 수급자격 미해당 등 수급권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공단에 평가취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근로능력평가) ① 근로능력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학적 평가
2. 활동능력 평가

② 공단은 근로능력평가를 위하여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보완을 요청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2회 이상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평가를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평가 의뢰를 반려할 수 있다.

④ 공단은 근로능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 정신보건센터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공단은 근로능력평가가 공단에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제8조(의학적 평가) ① 의학적 평가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의학적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영구고착 질환에 대해서는 의학적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의학적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의학적 평가 자문) ① 공단은 제8조에 따른 의학적 평가 시 자문위원의 의학적 자문을 받아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의학적 평가 시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학적 평가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의학적 평가 단계 결정을 하기 어려워 정밀한 심의가 필요한 사항

2. 질병의 특성,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 및 복합질환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
3.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의학적 평가와 관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학적 평가 자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10조(활동능력 평가) ① 활동능력 평가는 평가대상자에 대한 면접평가, 관찰평가 및 상황평가 등을 통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능력 평가를 실시하는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공단은 평가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평가, 관찰평가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는 등 활동능력 평가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평가의뢰를 반려할 수 있다.

④ 활동능력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근로능력의 판정 및 통지) 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 받은 내용을 토대로 근로능력판정을 실시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능력 없음
   가. 의학적 평가 결과가 3단계 및 4단계인 경우
   나. 활동능력 간이평가 결과 신체능력 평가항목 중 운동기능이 10점 이하이고 만성적 증상이 3점 이하인 경우 이거나, 인지능력 평가항목 점수의 합이 13점 이하인 경우
   다. 의학적 평가 결과가 2단계로서 활동능력 평가 결과가 63점 이하인 경우
   라.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로서 활동능력 평가 결과가 55점 이하인 경우
2. 근로능력 있음: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평가 의뢰가 반려된 경우에는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정 결과를 근로능력평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평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 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근로능력 판정의 유효기간 등) ① 제11조에 따른 "근로능력 없음" 판정의 유효기

간은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 고착 및 2~4단계 비고착인 경우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
2.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이며 고착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능력평가를 유예하고, 직전 평가와 동일하게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가. 직전 근로능력평가에서 장애유형과 상응하는 질환유형으로 평가하여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이면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

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등록 장애유형 유지

4. 직전 의학적 평가 결과가 영구고착 질환만으로 3~4단계인 경우에는 근로능력평가를 유예하고, 직전 평가와 동일하게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제5조제1항에 따른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사본 등 의학적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근로능력판정 조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상병상태가 호전되어 판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시 근로능력판정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능력 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능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근로능력평가 및 판정의 조정에 대하여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재판정 신청) ① 제11조의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근로능력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과 관련된 질병의 내용이 포함된 진료기록지 사본

2. 기타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정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판정 신청서와 추가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6조에 따라 재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평가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근로능력 평가를 실시했던 공단의 직원 및 자문위원은 재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 받은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로능력 재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11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5조(근로능력평가기준 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변경 및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1-363호, 2021.12.31.>

이 고시는 2022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안 제4조제2항제2호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안 제4조제2항제1호, 안 제8조제3항 및 안 제12조제1항제4호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 의학적 평가기준 (제8조 제4항)

제1장 총론

1. 목적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판정을 위한 의학적 평가를 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 평가대상 질환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근골격계 2) 신경기능계 3) 정신신경계 4) 감각기능계
5) 심혈관계 6) 호흡기계 7) 소화기계 8) 비뇨생식계
9) 내분비계 10) 혈액 및 종양질환계 11) 피부질환계

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기준

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

1)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제2장의 질환별 평가기준에 따라 진단 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2) 평가대상 질환유형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

평가대상 질환유형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
근골격계, 신경기능계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
정신신경계	○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가 발급 가능 – 기질성 정신질환의 경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담당의사(동 질환으로 입원중인 경우)도 발급 가능
감각기능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생식계, 내분비계, 혈액 및 종양질환계, 피부질환계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작성 기준

1) 질병이 2종류 이상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의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최대 2개의 질병에 한하여 진단서 작성이 가능하다.

2) 동일한 평가대상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한다. 다만, 다음의 동일한 질환유형 내 질병의 경우는 별도 대상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다.

가) 근골 격계 질환유형 내 <상·하지> 및 <척추>

나) 감각기능계 질환유형 내 <청각>, <평형> 및 <시각>

다) 소화기계 질환유형 내 <간질환> 및 <위장질환>

라) 피부질환계 질환유형 내 <피부질환> 및 <외모 및 결손질환>

3) 질환별 진단서 작성 기준

일반질환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 가능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등)	최근 2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정신신경계 질환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 자해 및 타해 등의 위험으로 시급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선천적 지적능력 저하 등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및 악화의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예외)

※ 만성질환을 제외하고,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없으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병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던 경우
- 질병이나 부상이 고착되어 더 이상의 치료에도 상태의 호전 및 악화 등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

4) 진단서 작성 내용

- 제2장 질환유형별 평가기준에 따라 상세히 기재한다.

다. 진단서 유효기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의 유효기간은 진단을 받은 날부터 2개월로 한다.

라. 진료기록지 사본 첨부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평가대상 질병에 대한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4. 평가방법

가. 평가대상 질환별 단계결정은 제2장의 질환유형별 평가기준에 따른다.

나. 동일한 평가대상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한다. 다만, 다음의 동일한 질환유형 내 질병의 경우는 별도 대상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다.

1) 근골격계 질환유형 내 <상·하지> 및 <척추>

2) 감각기능계 질환유형 내 <청각>, <평형> 및 <시각>

3) 소화기계 질환유형 내 <간질환> 및 <위장질환>

4) 피부질환계 질환유형 내 <피부질환> 및 <외모 및 결손질환>

다. 각기 다른 평가대상 질환유형별 질병이 2종류 이상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의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2개의 질병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한다.

라. 질병이 11개 평가대상 질환유형의 평가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질병이나 부상이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쳐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래 평가기준을 기초로 해당 질병이나 환자의 상태와 가장 근접한 평가대상 질환유형 중 한 개를 선택하여 그 단계를 평가할 수 있다.

단 계	평 가 기 준
1단계	근로수행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치료 또는 관찰이 필요한 경우 근로수행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주기적인 치료중인 경우
2단계	근로수행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지속적인 치료중이나 증상이 존재하는 경우
3단계	근로수행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수행능력에 제한이 따르는 경우
4단계	근로수행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수행능력에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경우

마. 평가대상 질병이 평가대상자의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미약하여 제2장의 질환유형별 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계외”로 평가한다.

바. 평가대상 질환유형별 평가표에 따른 단계평가 외에도 평가대상자의 질병이나 장애의 고착 및 영구고착 질환 여부를 평가한다.

1) 고착이란 질병이나 부상의 의학적 상태가 2년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영구고착 질환이란 특정 고착질환의 의학적 상태가 영구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평가를 받은 질환을 말한다.

3) 의학적 상태의 호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 또는 부상의 특성, 중증도, 치료경과, 치료의 종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사. 각 질환유형별 평가방법 및 검사방법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판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5. 평가 결과 합산

가. 2종류의 질병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의학적 평가결과는 2종류의 질병 중 단계가 높은 질병의 단계보다 1단계 위로 평가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동일 질환유형 내에서라도 근로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증도를 고려하여 1단계 위로 평가할 수 있다.

1) 신경기능계 : 뇌병변 등 기질적 병변에 의한 실어증 또는 지적능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

2) 감각기능계(청각) :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상 심한 이명이 확인되는 경우

3) 내분비계 : 당뇨병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나, 다른 질환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3 활동능력 평가기준 (제10조 제4항)

제1장 총론

1. 목적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능력 정도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근로능력판정을 위한 활동능력 평가를 하는 때에 적용한다.

3. 평가항목

구 분		정 의	평 가 항 목	
신체 능력	1 운동기능 (간이 평가항목)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1	팔뻗기
			2	쪼그려 앉기
			3	평지이동
			4	층간이동
			5	물건 들고 옮기기
	2 만성적 증상 (간이 평가항목)	판정 신청한 질환 외 보유 중인 만성질환 여부 및 상태	6	입·통원
			7	약복용
인지 능력	3 자립성 (간이 평가항목)	건강한 심신의 유지 및 자기관리 할 수 있는 능력	8	건강관리
			9	자기관리
	4 사회성 (간이 평가항목)	타인과 어울려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10	의사소통
			11	감정조절
			12	대처능력
			13	공간지각력

구 분		정 의	평 가 항 목	
음주	5 알코올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	14	음주문제
영향요인	6 자격증	노동시장 취업을 위한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15	자격증 보유
	7 근로 경험	취업 이력을 통한 근로활동 가능 여부	16	근로 경험
	8 구직동기	전반적인 평가과정에서 보이는 성실성 및 책임감 정도	17	의지력
	9 연령	연령에 따른 취업가능 여부	18	연령
	10 학습능력	학습능력에 따른 취업가능 여부	19	학습능력

4. 평가방법

가. 평가는 간이평가 → 전체 평가 순으로 하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른다.

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적용시 면접평가 → 관찰평가 → 상황평가 순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각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평 가 방 법
면접평가	평가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대상자와 대면하여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관찰평가	평가대상자의 행동, 말투, 태도 등을 관찰하여 평가
상황평가	사전에 이미 획득하거나 또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얻은 주거현황, 건강상태, 가족과의 관계 등 상황정보에 근거하여 평가

5. 평가척도

가. 신체능력 및 인지능력은 각 평가항목의 평가 기준별로 1~5점 하나의 점수를 부여하고 음주와 영향요인은 항목별로 0~3점을 부여하여 합산

나.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은 1차적으로 점수별로 형성하고 있는 기준을 우선 적용

다.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침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적용

제2장 활동능력 평가 항목별 기준

구 분		정 의	평 가 항 목		점수구성
신체 능력 (간이 평가 항목)	1 운동기능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1	팔뻗기	1점 ~ 4점
			2	쪼그려 앉기	1점 ~ 4점
			3	평지이동	1점 ~ 4점
			4	층간이동	1점 ~ 4점
			5	물건 들고 옮기기	1점 ~ 4점
	2 만성적 증상	판정 신청한 질환 외 보유 중인 만성질환 여부 및 상태	6	입·통원	1점 ~ 5점
			7	약복용	1점 ~ 5점
인지 능력 (간이 평가 항목)	3 자립성	건강한 심신의 유지 및 자기관리 할 수 있는 능력	8	건강관리	1점 ~ 5점
			9	자기관리	1점 ~ 5점
	4 사회성	타인과 어울려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10	의사소통	1점 ~ 5점
			11	감정조절	1점 ~ 5점
			12	대처능력	1점 ~ 5점
			13	공간지각력	1점 ~ 5점
음주	5 음주문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	14	음주문제	1점 ~ 3점
영향 요인	6 자격증	노동시장 취업을 위한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15	자격증 보유	1점 ~ 2점
	7 근로 경험	취업 이력을 통한 근로활동 가능 여부	16	근로 경험	1점 ~ 2점
	8 구직동기	전반적인 평가과정에서 보이는 성실성 및 책임감 정도	17	의지력	0점 ~ 2점
	9 연령	연령에 따른 취업가능 여부	18	연령	1점 ~ 3점
	10 학습능력	학습능력에 따른 취업가능 여부	19	학습능력	1점 ~ 3점

제 3 장

근로능력판정

3-1. 근로능력판정 대상

3-2.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근로능력판정 조직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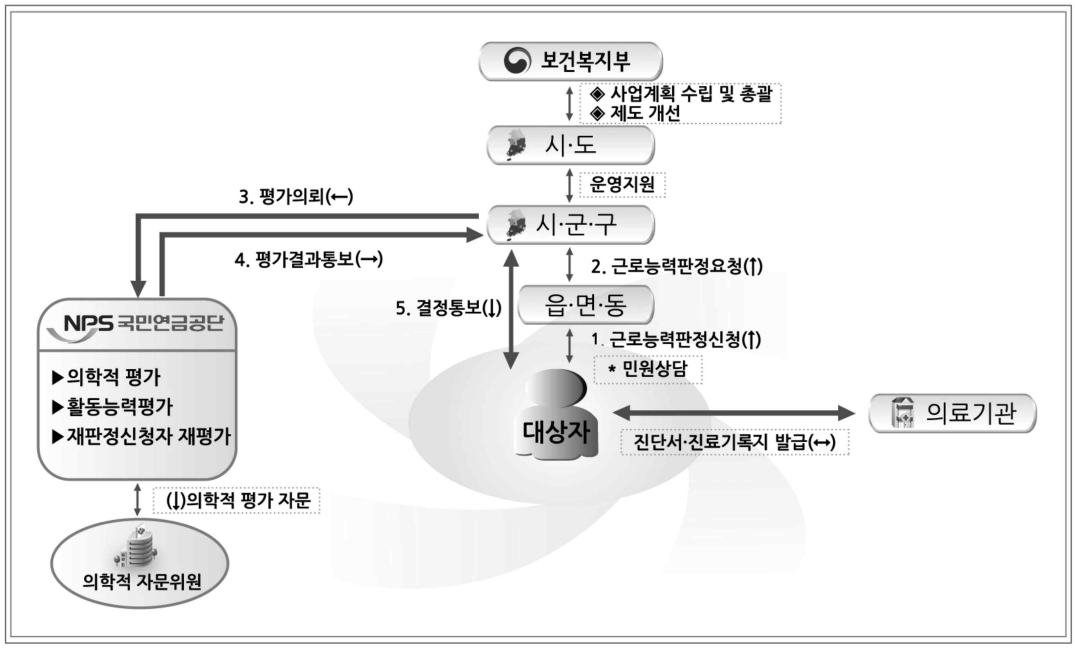

【근로능력판정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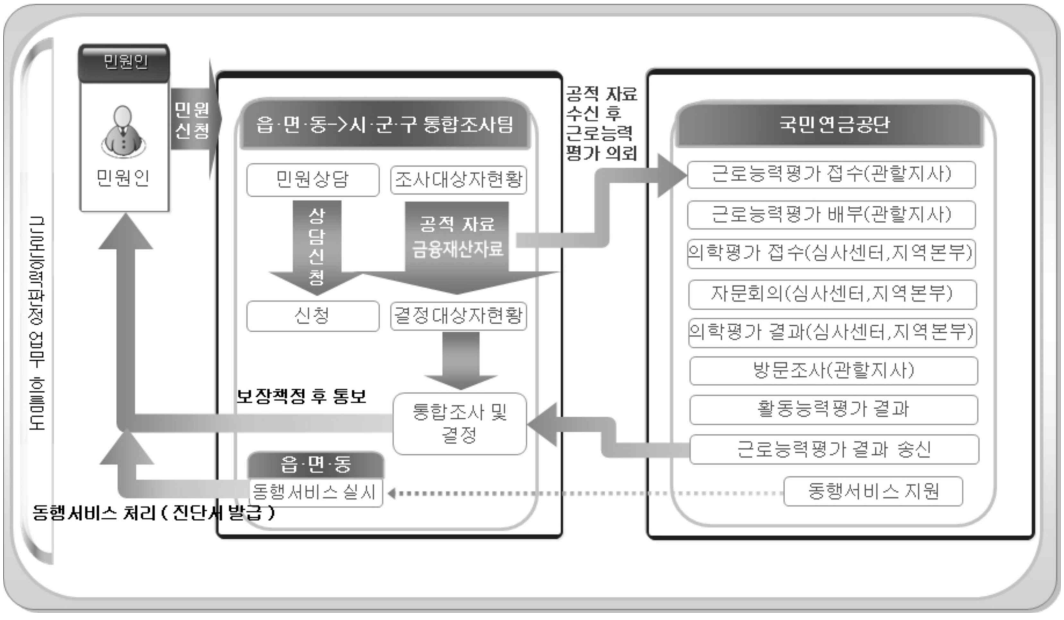

【근로능력판정 업무처리 절차】

단 계	업 무 내 용	처 리
유효기간 만료예정자 추출	● 근로능력평가 정기평가 대상자 추출 및 명단 읍·면·동에 제공	시·군·구
근로능력판정 신청	● 질병·부상으로 인한 근로능력판정 신청 접수 –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등 근거자료 – 서류확인, 신청인 정보 등록 후 시·군·구에 근로능력판정 요청(행복e음) ● 질병·부상으로 인한 근로능력평가 및 정기평가 안내 ● 근로능력판정 결과 불복에 따른 재판정 신청안내 ● 진단서 제출 곤란자에 대한 진단서 발급 동행서비스 (선별적 서비스) ※ 행려환자는 공문으로 근로능력평가 신청 가능	읍·면·동
평가의뢰	● 평가대상자 정보 및 진단서 등 평가관련 자료 공단 이송 (행복e음)	시·군·구
평가접수	● 평가자료 접수(근로능력평가번호 부여) ● 질환별로 심사센터 또는 지역본부에 심사 배부(NPIS) ● 진단서 발급 동행서비스 지원 및 직접진단 서비스 (선별적 서비스)	국민연금공단 지사
의학적 평가	●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사본 등을 검토하여 의학적 평가 – 의학적 평가 자문위원을 활용, 심사 실시 및 질환별 단계 평가 ● 의학적 평가결과 관할지사로 통보(NPIS)	국민연금공단 심사센터 지역본부
활동능력 평가	● 간이평가 등 활동능력 평가 실시 – 운동기능, 만성적 증상, 자립성, 사회성, 근로가능성 등 19개 항목 점수 부여(총점 75점) – 면접평가, 관찰평가 및 주변인 정보 활용(상황평가) 평가 실시 ※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에 자료제공 및 협조 요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단 계		업 무 내 용	처 리
평가결과 통보		● 의학적 평가 및 활동능력 평가 등 근로능력평가 결과 시·군·구 통보(연계망 활용) ● 국민연금공단에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	국민연금공단
근로능력판정 및 통지		● 국민연금공단의 평가결과 토대로 근로능력판정 (행복e음)	시·군·구
권리 구제	재판정	● 시·군·구청장에게 재판정 신청서 제출(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진료기록지 사본, 검사결과지 등 불복에 대한 입증 서류 첨부	신청자 (시·군·구)
		● (의학적 재평가) 자문의사 재선정후 재평가	국민연금공단 심사센터 지역본부
		● (활동능력 재평가) 평가자 재선정후 재평가	국민연금공단 지사
		● (근로능력 재판정) 근로능력 재평가 결과 토대로 재판정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통지	시·군·구
	이의 신청	● (1차) 시·군·구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시·군·구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에 이의신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 근로능력평가관련 자료제공 등 지원(국민연금공단) –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송부일부터 30일 이내 통지	시·도
		● (2차) 시·도지사 경유, 복지부 제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 – 근로능력평가관련 자료제공 등 지원(국민연금공단) –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송부일부터 30일 이내 통지	보건복지부

3-1 근로능력판정 대상

1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다음의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만 18세('22년 기준 2004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 65세('22년 기준 1957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2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가.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1)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의 제출을 통한 근로능력평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만 적용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적용하지 않음

(2)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만 20세('22년 기준, 2002년생)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 근로능력자로 전환

  ※ 한겨레중고등학교(북한이탈주민자녀)에 재학 중인 만 20세 이상 재학생은 근로 곤란자로 판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1~3급 상이등급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2021-210호)」 별표2의 '의료급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및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21-170호)」 별표3의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 산정특례 등록한 본인에 한해 산정특례 등록기간 동안 근로능력평가 유예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암환자는 5년간, 중증화상환자는 1년(6개월 연장 가능), 결핵질환(A15~A19, U84.3)은 등록시작일 ~ 치료종료 시까지 근로능력평가 유예

    · 단, 산정특례 등록대상자이나 미등록 상태인 경우는 신청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조치

  -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제에 따른 등록자 확인 방법

    · (현재 기초수급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산정특례 등록 여부 확인 후 산정특례 등록자인 경우 등록기간 동안 근로능력평가 유예

    · (기초수급 예정자 / 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가입대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산정특례 등록 여부 확인하여 등록기간 동안 '근로능력 없음' 판정 처리

    ※ 「2021 의료급여 사업안내」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등록(p.286~297, p.627~671 참고)

  -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환자(상병코드 B20~B24)의 경우 최초 급여 신청 시에만 '일반진단서'로 확인하고, 이후 유효기간 없이 계속 적용

나.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1) "가.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의 (2)~(3)에 해당하는 사람, 18세 미만의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수급(권)자로만 구성된 가구

(2) 근로능력은 있으나 가구원의 양육·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가 곤란한 자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

(가) 미취학 자녀(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취학의무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녀)를 양육하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권)자

① 판정대상 가구원이 미취학 자녀 양육
②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음
③ 보육료(양육수당은 제외),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음
④ 하루 8시간 이상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음

(나)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간병*·보호**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간병. 보호대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스스로 식사가 불가능하다.
- 스스로 용변이 불가능하다.
-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 결함으로 인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하다.
- 질병·부상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다.

② 간병 또는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음

③ 월 평균 20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의 사회복지서비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군·구 자체사업 등 포함)를 제공 받지 않음

※ 종일 간병·보호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

* 간병대상자 :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
** 보호대상자 : 스스로 식사나 용변이 불가능하거나 보장구가 있어도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 결함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조건부과제외자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

(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임신 사실 확인서(소견서) 및 출생증명서 또는 공부 확인

(나)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회복무요원, 상근 예비역 등
- 행복e음의 군입대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복무 확인서 첨부
- 복무기간 종료 후에는 새로이 근로 능력 여부를 판정

※ 단, 산업기능요원 및 직업군인(부사관, 장교)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으로 근로무능력자로 판단하지 않음에 유의

3-2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1 근로능력판정 신청 안내

(1)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 있는 사람 및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로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수급자 등이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 만료일자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능력 있음' 으로 판정

- 중증질환(암, 중증화상만 해당)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투석, 장기이식, 인체면역 결핍바이러스 환자, 결핵 포함)에 대해서는 산정특례 등록 대상인지 확인하고 확인결과 산정특례등록자인 경우 해당 등록기간*동안 평가 유예

* 희귀·중증난치 및 암환자(5년, 재등록 가능), 중중화상환자(1년, 6개월 연장 가능), 결핵질환(A15~A19, U84.3, 산정특례등록일~치료종료일)

※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대상 목록

※ 아래 상병은 KCD분류코드가 없어 접수화면에서 산정특례대상 여부 팝업 표출 불가하므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확인하여 상기상병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특례등록여부 확인하여 처리

< KCD분류코드가 명시되지 않은 질환 >

- 장기이식의 경우
  가. 간이식을 받은 사람(V013)
  나. 췌장이식을 받은 사람(V014)
  다.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V015)
  라. 신장이식을 받은 사람(V005)
  마. 폐이식을 받은 사람(V277)
  바. 소장이식을 받은 사람(V278)

- 만성신부전의 경우
  가.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사람(V001)
  나. 복막투석을 실시하는 사람(V003)

- 혈우병 : 상병별 코드, 일련번호 선택하여 전송

(2) 근로능력평가(의학적 평가)를 위한 구비서류 안내 및 평가진행 중 추가 자료보완이 요청될 수도 있음을 안내(정확한 상태 확인을 위한 추가 검사자료 또는 진료기록 등)

– 제출구분이 "필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통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선택"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질환유형별 해당 자료가 있으면 제출합니다.

– 영구고착 질환 또는 장애인등록 심사자료 활용이 가능한 대상자는 아래의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단, 기록물 보존기간이 경과한 대상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름. 예) 기초수급자 탈락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존 제출한 자료 일체는 폐기 처리됨.

제출 구분	질환 유형	구 분	해당 자료
필수	공 통	진료기록지 등	– **최근 2개월 간 진료기록지**
		약물처방지 등	– **최근 2개월 간 투약내역이 있는 경우 약물처방지**(약물명, 용량, 투여일수 등) – 평가 부위와 관련된 수술이력 또는 최근 1년 이내 입원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입원·퇴원 요약지
선택	근골격계	진료기록지 등	– 상세 치료기록지(물리치료, 신경차단술 등), 재활평가자료 ※ 절단으로 인해 최근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영상자료(X-ray)로 대체 가능합니다.
		검사자료	– 해당 부위의 영상자료(CT, X-ray, MRI 등), 수동관절기능 제한(각도)에 대한 검사 결과, 신경손상(마비)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검사(도수근력, 근전도 등) 결과
	신경 기능계	진료기록지 등	– **(신규)** 초진 당시 입원·퇴원 기록지, 가장 최근 시행한 재활평가자료 – **(정기평가)** 가장 최근 시행한 재활평가자료 – **(뇌전증)** ① 발작이 없는 경우 : 최근 2개월 간 진료기록지 및 약물처방지 ② 발작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간 진료기록지 및 최근 2개월 간 약물처방지 ※ 소아마비, 뇌성마비로 인해 최근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소견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검사자료	– 뇌·척수 영상자료(CT 또는 MRI) 또는 판독지 – 신경손상(마비)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검사(도수근력, 근전도 등) 결과

제출 구분	질환 유형	구 분	해당 자료
	정신 신경계	진료기록지	– **(신규)** 초진 당시 진료기록지 ※ 정신신경계 질환은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선천성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최근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소견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검사자료	– 임상심리평가보고서, 가장 최근 시행한 인지기능 검사(MMSE, GDS, CDR 등) 결과
	감각 기능계	진료기록 및 검사자료	– 청각 : 가장 최근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지 등 – 평형 : 가장 최근 시행한 전정기능검사 결과지 – 시각(질환별 검사자료) ①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망막색소변성, 망막박리, 망막혈관폐쇄 등: 최대교정시력, 가장 최근 시행한 안저사진, M-OCT(황반부안구광학단층촬영), 시야검사결과지(망막색소변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② 녹내장 : 최대교정시력, 가장 최근 시행한 안저사진, R-OCT(시신경섬유층두께검사), 시야검사결과지 ③ 각막혼탁 : 전안부 천연색 사진
	심혈관계	검사자료	– 심전도 검사 결과(그래프를 포함합니다) – 각종 검사판독지(관상동맥조영술, 관상동맥 CT,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중재술 시술 또는 수술기록지 ※ 신규평가 시 제출했던 결과지는 정기평가 시 생략 가능하나, 제출 이후 검사를 추가로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자료를 제출
	호흡기계	검사자료	– 가장 최근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지(그래프 포함), 흉부영상자료(X-ray)
	소화기계	검사자료	– 가장 최근 시행한 혈액검사(간기능검사 등) 결과지, 복부 초음파 및 CT 판독지, 위내시경검사 결과지
	비뇨 생식계	검사자료	– 가장 최근 2회 이내 시행한 혈중 혈청크레아티닌 검사 및 소변검사 결과지
	내분비계	검사자료	– 가장 최근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지
	혈액·종양 질환계	검사자료	– 가장 최근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지, 영상자료(CT 또는 MRI) 판독지
	피부 질환계	검사자료	– 일반 천연색 사진(해당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촬영 날짜를 기재합니다)

(3)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 해당지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협조(진료기록 등 확인)를 받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게 한 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하도록 안내
- 원활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을 위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협력 병·의원' 지정·활용 가능
- 위와 같은 처리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평가대상자와 그 친족 등의 신청으로 동행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에 동행서비스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2 근로능력평가 구비서류 확인 (지자체 수행)

(1) 근로능력평가를 위해서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서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최근 2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사본 등이 필요함

- 단, 영구고착 질환 또는 장애인등록 심사자료 활용이 가능한 대상자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만 제출 가능

(2) 근로능력평가 신청서(필수 구비서류)

- **반드시 개정된 서식**으로만 접수 가능(고시 별지 제1호 서식, `21.12.31. 개정)
- **(기재사항 누락 확인 철저)** 평가 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작성일, 서명 또는 날인, 영상자료 첨부 여부 등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①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등록 심사 이력이 있거나, ② `영구고착 질환` 평가 이력이 있는 대상자가 해당 자료를 근로능력평가에 열람·활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

(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필수 구비서류)

- `19.10.23. 개정된 서식으로만 접수 가능 활용(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고시의 의학적 평가 기준에 따라 진단 후 발급된 것인지 확인
- 진단서 발급주체는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 또는 한의사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의학적 평가 기준에 따라 진단 후 발급

  – 한의사는 근골격계 및 신경기능계 질환에 대해서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 가능

  – 정신신경계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만이 발급 가능

  · 다만, 기질성 정신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도 발급 가능(※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동 질환으로 입원 중인 경우 담당의사도 진단서 발급 가능)

【기질성 정신질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 진단서 발급가능)】

연번	상병코드	상 병	비고
1	F00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2	F00.0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3	F00.1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4	F00.2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5	F00.9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6	F01	혈관성 치매(Vascular dementia)	
7	F01.0	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	
8	F01.1	다발-경색치매	
9	F01.2	피질하 혈관성 치매	
10	F01.3	혼합형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	
11	F01.8	기타 혈관성 치매	
12	F01.9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13	F02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14	F02.0	피크병에서의 치매	
15	F02.1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서의 치매	
16	F02.2	헌팅톤병에서의 치매	
17	F02.3	파킨슨병에서의 치매	
18	F02.4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에서의 치매	
19	F02.8	달리 분류된 기타 명시된 질환에서의 치매	
20	F03	상세불명의 치매	
21	F04	알콜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닌 기질성 기억상실증후군	
22	F05	알콜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닌 섬망	
23	F05.0	치매에 병발되지 않은 섬망	
24	F05.1	치매에 병발된 섬망	
25	F05.8	기타 섬망	
26	F05.9	상세불명의 섬망	
27	F06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	
28	F06.0	기질성 환각증	
29	F06.1	기질성 긴장성 장애	
30	F06.2	기질성 망상성[조현병-유사] 장애	
31	F06.3	기질성 기분[정동]장애	

연번	상병코드	상 병	비고
32	F06.4	기질성 불안장애	
33	F06.5	기질성 해리장애	
34	F06.6	기질성 정서불안정[무력성]장애	
35	F06.7	경도 인지장애	
36	F06.8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명시된 정신장애	
37	F06.9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장애	
38	F07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39	F07.0	기질성 인격장애	
40	F07.1	뇌염후증후군	
41	F07.2	뇌진탕후증후군	
42	F07.8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인한 기타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43	F07.9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인한 상세불명의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44	F09	상세불명의 기질성 또는 증상성 정신장애	

②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다음 지역의 경우에는 의사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22.1월 기준)】

시도	계	시·군·구
강원	10	양구군, 평창군,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	2	증평군, 단양군
충남	3	태안군, 계룡시, 청양군
전북	3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전남	5	구례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함평군
경북	8	울진군, 군위군,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2	남해군, 산청군
계	33	

● 진료기간에 따라 평가대상 질환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기준

일반질환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 가능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등)	최근 2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정신신경계 질환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 자해 및 타해 등의 위험으로 시급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선천적 지적 능력 저하 등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예외)

– 만성질환을 제외하고,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없으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가능

·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병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던 경우

· 질병이나 부상이 고착되어 더 이상의 치료에도 상태의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

(5)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임

(6)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기재된 평가대상 질환에 대한 최근 2개월 동안의 진료기록지 사본 첨부

3 근로능력판정 신청서류 접수 (지자체 수행)

(1) 근로능력판정 구비서류가 근로능력판정에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확인한 후 접수

- 평가 구비서류 (필수 구비서류)

공통	–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최근 2개월 이내 발급), – 진료기록지 사본(최근 2개월분), 소견서(해당하는 경우)
영구고착 질환 또는 장애인등록 심사자료 활용자	–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 필수적으로 소견서 첨부해야 하는 경우(※ 추가 검사결과지 등 제출 가능)

①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병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던 경우

②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질병이나 부상이 고착되어 더 이상의 치료에도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

(2) 다음의 경우 근로능력평가 의뢰 전에 평가대상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하여 자료를 제출 받아야 하고, 평가대상자는 자료보완을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완·제출하여야 함

- 평가 구비서류가 미비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기재사항 흠결 등 형식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

(3) 국민연금공단이 평가진행 과정에서 평가 대상자에게 추가로 자료보완 요구 또는 공단 자문의사에게 직접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음을 안내

※ 직접진단: 서면평가 원칙의 예외로서 제출된 서면자료로 의학적 상태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평가대상자를 공단 자문위원이 직접 대면하여 의학적 상태를 진단하는 절차

- 자료보완을 2회 이상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보완에 불응하는 경우는 평가 반려함을 안내
- 자료보완 등 기간은 평가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료보완 등 지연 시 수급권결정이 지연될 수 있음에 대해서도 안내

(4) 산정특례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질병인 경우 근로능력평가를 유보하고, 등록 상태 여부 확인

- 등록대상에 해당하나, 미등록 상태인 경우는 등록하도록 안내
- 산정특례 등록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대상자만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평가 의뢰
  - ‘근로능력평가요청’ 메뉴 하단의 “기타요청내용”란에 확인 사항 기재
  - ‘산정특례 등록대상 아님’ 또는 ‘산정특례 등록대상’에 해당되나 근로능력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는 그 사유도 기재

4 근로능력평가 의뢰 (지자체 수행)

(1) 근로능력판정 구비서류 접수 시 행복e음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평가를 요청

- 근로능력평가 요청 시기
  - 기존 수급자는 접수된 근로능력판정 구비서류 확인이 끝나는 대로 근로능력평가를 요청
  - 신규 수급권자는 소득·재산에 대한 공적자료 조회 회신(금융재산은 회신 전) 후 기초수급자 기준선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 한해 평가를 요청
    - 다만, 긴급하게 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로능력판정 구비서류 접수 즉시 평가 요청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신속한 평가진행이 필요한 경우는 접수화면 전산 항목 상 '긴급'을 클릭하고, "기타요청내용"에 사유 기재(국민연금공단에서 긴급으로 표출되는 기준은 '긴급' 항목을 'Y'로 클릭한 경우에 한하며, "기타요청내용"에 입력한 긴급 문구는 참고사항임)

- 근로능력평가를 요청할 결정대상자 가구에 대한 전체판정을 거쳐 근로능력평가를 요청할 대상자의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등 구비서류를 등록한 후 근로능력평가를 요청
  - 평가대상 질환, 신청일자, 신청인의 기본정보, 신청유형 등 필수입력사항을 확인
  - 평가 대상자의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2개 이내의 평가대상 질병을 등록하여 평가 의뢰

※ 다수의 질병에 대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평가는 2종류의 질병까지만 인정하므로 평가받을 질병을 평가대상자에게 확인하여 상태가 더 중한 2종류 이내로 확정하여 평가 의뢰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평가대상 질환과 질병명 또는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분류번호 등을 확인하여 바르게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

* 평가대상 질환유형

①-1 근골격계(상·하지) 한	①-2 근골격계(척추) 한	② 신경기능계 한	③ 정신신경계
④-1 감각기능계(청각)	④-2 감각기능계(평형)	④-3 감각기능계(시각)	⑤ 심혈관계
⑥ 호흡기계	⑦-1 소화기계(간질환)	⑦-2 소화기계(위장질환)	⑧ 비뇨생식계
⑨ 내분비계	⑩ 혈액 및 종양질환계	⑪-1 피부질환계(피부질환)	⑪-2 피부질환계(외모·결손질환)

※ 근로수행에 영향을 미칠만한 가장 중한 질환유형을 2개까지 기재할 수 있으나 같은 질환유형은 1개만 선택하여 기재하고, 질환유형별로 이에 해당하는 상세 질병명은 1개만 선택하여 기재
※ 위의 질환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질환유형을 선택하여 기재
※ 한 표시는 한의사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질환유형을 의미

– 평가 자료의 스캔 상태 및 파일명 등이 평가 대상자와 정확하게 부합하는지 확인

- 평가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 근로능력평가 시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근로능력평가요청」 메뉴 하단의 “기타요청내용”에 기입

– 자해 또는 타해 위험 여부, 감염성 질환, 음주 습관, 생활환경, 활동능력평가 가능 시간·장소 등

※ 자립지원과-5485(2020.11.23.)“‘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는자’에 대한 활동능력평가 개선방안 안내”

(2) 근로능력평가 서류는 행복e음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송부

-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등 스캔 가능한 서류는 행복e음을 통해 PDF, TIFF 등 파일 전송(우편송부 불가). 다만 근로능력평가 신청 시 진료기록지 사본을 저장매체(CD)에 담아 제출한 경우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송부하는 방법으로 평가의뢰 가능

–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등 평가서류 원본은 근로능력평가 신청기관에서 보관

- 행복e음은 이미지 파일만 전송 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X-RAY 필름, CD 영상자료, 안저 사진 및 안면사진 등 스캔이 불가능한 자료의 경우 우편(등기), 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송부

(3) 판정 신청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의 유형 구분

① **신규평가 :** 기존 수급자 중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 유효기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신규 수급권자가 근로능력판정을 신청하는 경우

※ [예시] ‘근로능력 있음’ 판정 이후 질환을 추가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규평가에 해당(재평가 아님)

② **정기평가 :** 근로능력 “없음” 판정의 유효기간 만료 도래 예정자에 대한 평가

③ **재 평 가 :** ①, ②, ④의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불복하여 재판정을 신청한 경우

④ **직권평가 :** 지자체 공무원이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대해 직권으로 평가를 실시 또는 의뢰하는 경우

(4) 주소변경 통보

- 국민연금공단 평가 중 대상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활동능력평가 관할지사 변경을 위해 변경 내역을 지체 없이 공단으로 통보

(5) 구비서류 확인사항

구 분		확 인 사 항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개정 2021.12.31.> ● 신청서 상 기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평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작성일, 서명 또는 날인, 영상자료 첨부 여부 등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 영구고착 질환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등록 심사 이력이 있고, 해당 자료를 근로능력평가에 열람·활용하기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서 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개정 2019.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통합검색'으로 검색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 서식 찾기에서 검색 * 구서식 제출 시 최근 양식으로 다시 제출 안내
	유효기간	● **지자체 '최초등록일'로부터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유효
	발급주체	● 의사, 한의사 – **한의사는 근골격계 및 신경기능계 질환만 발급** 가능 * 전산 접수 화면 : '의사전문과목' 항목 상 한방 관련 해당 과목으로 클릭 – **정신신경계 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 가능. *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은 일반 의사도 발급 가능 * 기질성 정신질환(F00~F09)의 경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입원 시에는 담당의사도 가능 ※ 치과의사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불가
	발급기준	● **일반질환 : 통원이나 입원치료가 있는 경우** 발급 가능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소견서를 첨부하여 발급 가능한 경우 • 이전 진료기관의 진료내용 확인 시 발급 가능 • 질병부상이 고착되어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 ● **만성질환 : 2개월 이내 치료받은 기록 있는 경우** ● **정신신경계 : 3개월 이상 치료 시행하였음에도 증상 지속 시**
	기재사항	● 진단대상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 **진단질환명**(질환유형, 상세질병명, KCD 분류번호, 진료기간), 근로능력 평가내용, 치료 경과내용, 발급기관(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직인**), 진단의사(**면허번호, 전문의 번호, 전문과목, 진단의사 기명, 서명 또는 날인**), **발급일자** 등 확인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확 인 사 항</th></tr>
<tr><td rowspan="3"></td><td></td><td>– 의료기관 직인 또는 발급의사 서명(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 접수를 보류하고, 민원에게 보완 요청(다만, 해당 의료기관이 개인 병·의원으로 직인이 없거나 의사 개인도장을 직인에 갈음하는 경우, 유선확인 후 '근로능력평가요청' 메뉴 하단의 "기타요청내용"에 기재)
– 정신신경계 질환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번호 또는 전문과목이 누락된 경우 : 유선으로 확인하고 '근로능력평가요청' 메뉴 하단의 "기타요청내용"에 기재</td></tr>
<tr><td>평가의뢰
질병건수</td><td>● 최대 2종류 질병까지 평가 의뢰 가능
● 동일 질환유형 내에서는 1개 질병만 평가 의뢰 가능
* 다만, 아래의 질병은 동일 질환유형이더라도 각각 의뢰 및 평가 가능
<table>
<tr><td>유형</td><td>근골격계</td><td>감각기능계</td><td>소화기계</td><td>피부질환계</td></tr>
<tr><td>질병</td><td>상·하지 / 척추</td><td>청각 / 평형 / 시각</td><td>간 / 위장</td><td>피부 / 외모 및 결손</td></tr>
</table>
※ (예시) 상·하지 질병과 척추 질병은 각각 평가 의뢰 가능</td></tr>
<tr><td>평가질병
착오의뢰</td><td>● 평가의뢰 질병 건수가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유의
– 질병 2개 의뢰 가능하나, 1개만 입력한 경우 ⇒ 취소 후 다시 2개 질병 입력
– 동일 질환유형 내 2개 질병을 입력한 경우 ⇒ 취소 후 다시 1개 질병만 입력
● 질환유형, 질병명, KCD 분류번호 등이 오류 입력되지 않도록 유의</td></tr>
<tr><td colspan="2">진료기록지 사본</td><td>● 최근 2개월분
–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 전부 제출
(예: 최근 2개월간 총 10회 진료 받은 기록이 있다면 10회 방문 기록 모두 제출)
* 만일 최근 2개월 내에는 병원에 방문한 기록이 없으나, 2개월 이전 방문하여 다량의 약물 처방을 받아 최근까지도 계속 약물 복용 중인 경우
: 해당 자료를 포함하여 최근 진단서 발급 당일 자료까지 모두 제출</td></tr>
<tr><td colspan="2">영상자료
(CD 또는 X-ray 필름)</td><td>● 우편송부 시 반드시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항목에 기재 및 전산 해당 항목에 수량 등록 • 전송 후 등기우편 발송
* 영상자료가 공단에 도착하기 전 평가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당 내용을 공단에 사전 안내 필요</td></tr>
<tr><td colspan="2">소견서</td><td>●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의 해당 질병으로 인한 진료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나 질병·부상이 고착되어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시 소견서 첨부</td></tr>
<tr><td colspan="2">추가전송
(진료기록지 등)</td><td>● 근로능력평가 진행 중 대상자가 자료를 추가 제출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추가 송부 방법
– 추가 송부 가능한 서류 : '평가요청중인 질병' 관련 자료(진료기록지 등)
* 당초 평가 요청한 질병과 다른 질병에 대한 서류(진단서 등)는 불가
– 전송 가능 시기 : 국민연금공단 진행단계 중 접수단계까지</td></tr>
</table>

5 자료보완 (국민연금공단 ↔ 지자체 ↔ 대상자)

(1) 국민연금공단은 의학적 평가를 하던 중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검사결과 등의 필요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시·군·구에 요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자료와 제출 기한 등을 정하여 시·군·구에 통보
  - 자료보완의 기한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이며, 자료의 성질이나 확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정
- 시·군·구에서는 자료보완 안내서를 행복e음에서 출력하여 평가대상자에게 송부하고, 보완 요청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안내
- 검사예약 대기 등 제출기한 내에 자료를 보완하기 불가능한 경우 시·군·구에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통보
- 동행서비스를 제공받은 평가대상자가 거동불편 등으로 자료를 직접 보완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평가대상자의 동의 및 위임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진료기록 등 평가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제공 가능
- 보완요청 자료 접수 및 미제출시 처리 방법
  - 제출기한이 만료되었으나 보완이 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시·군·구에 자료보완 재요청
  - 2회의 자료보완 요청(제출촉구 포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국민연금공단은 평가 의뢰를 반려

【자료보완 업무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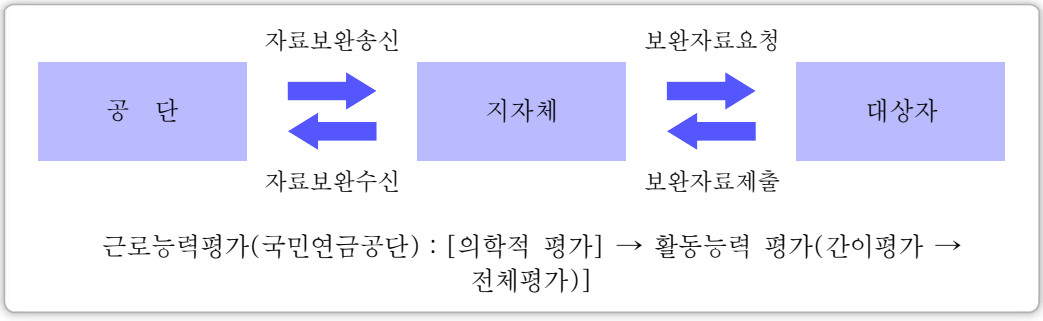

근로능력평가(국민연금공단) : [의학적 평가] → 활동능력 평가(간이평가 → 전체평가)]

6 근로능력평가 취소 (지자체 수행)

(1) 평가대상자가 사망, 수급자격 상실 또는 수급자격 미해당, 근로능력평가신청 철회 등의 사유로 평가가 불필요한 경우 평가의뢰 취소

- 신규 수급권자가 금융소득자료 확인으로 수급 미해당 시 평가의뢰 취소

(2) 평가의뢰 취소 시 행복e음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자동 통보되며, 국민연금공단은 진행 중인 평가 중단

(취소사유)
① 평가대상자 사망 ② 평가대상자 수급권 상실 ③ 평가대상자 평가 철회
④ 착오의뢰 ⑤ 기타

7 근로능력평가 반려 (국민연금공단 수행)

(1) 평가대상자에게 자료보완, 직집진단 또는 활동능력평가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평가의뢰 반려 가능

(2) 진단서상 필수 기재사항 및 확인사항 누락 등 평가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반려 가능

(3)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평가 의뢰가 반려된 경우 사군구는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 가능

8 근로능력평가 방법 (국민연금공단 수행)

근로능력평가(국민연금공단) : [의학적 평가] → 활동능력 평가(간이평가 → 전체평가)]

(1)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근로능력평가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안내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 및 평가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2) 의학적 평가

-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평가 기준에 따라 발급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등을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전문 직원 및 자문위원(의사 또는 한의사)이 평가하여 의학적 평가 단계 결정(1단계~4단계)

※ 평가대상 질병·부상이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미약하여 의학적 평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계외'로 평가

※ 공단이 `영구고착 질환`으로 인정한 경우 다음 평가부터 의학적 평가를 생략하고 기존 의학적 평가 단계를 준용하며, 의학적 단계에 따라 활동능력 평가 여부 결정(시행일 : '22.12.1.)

- 다수의 질병에 대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의학적 평가 기준에 따라 2종류의 질병까지만 평가 실시
- 2종류의 질병 모두 의학적 단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높은 단계보다 1단계 상향 결정

(3) 활동능력 평가

- 국민연금공단의 활동능력 평가 담당자가 평가대상자에 대한 면담 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활동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점수(총점 75점) 부여
- 국민연금공단에서 활동능력 평가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한 경우 관련 정보 제공, 출장 동행, 장소 제공 등에 최대한 협조

9 '근로능력 없음' 판정기준

- (1차) 의학적 평가 결과가 3단계 및 4단계인 경우
- (2차) 활동능력 평가의 간이평가 결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체능력 평가항목 중 운동기능이 10점 이하이고 만성적 증상이 3점 이하
  - 인지능력 평가항목 점수의 합이 13점 이하
- (3차) 의학적 평가 단계별 활동능력 평가 결과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의학적 평가 2단계인 경우 : 활동능력 평가 63점 이하
  - 의학적 평가 1단계인 경우 : 활동능력 평가 55점 이하

【근로능력판정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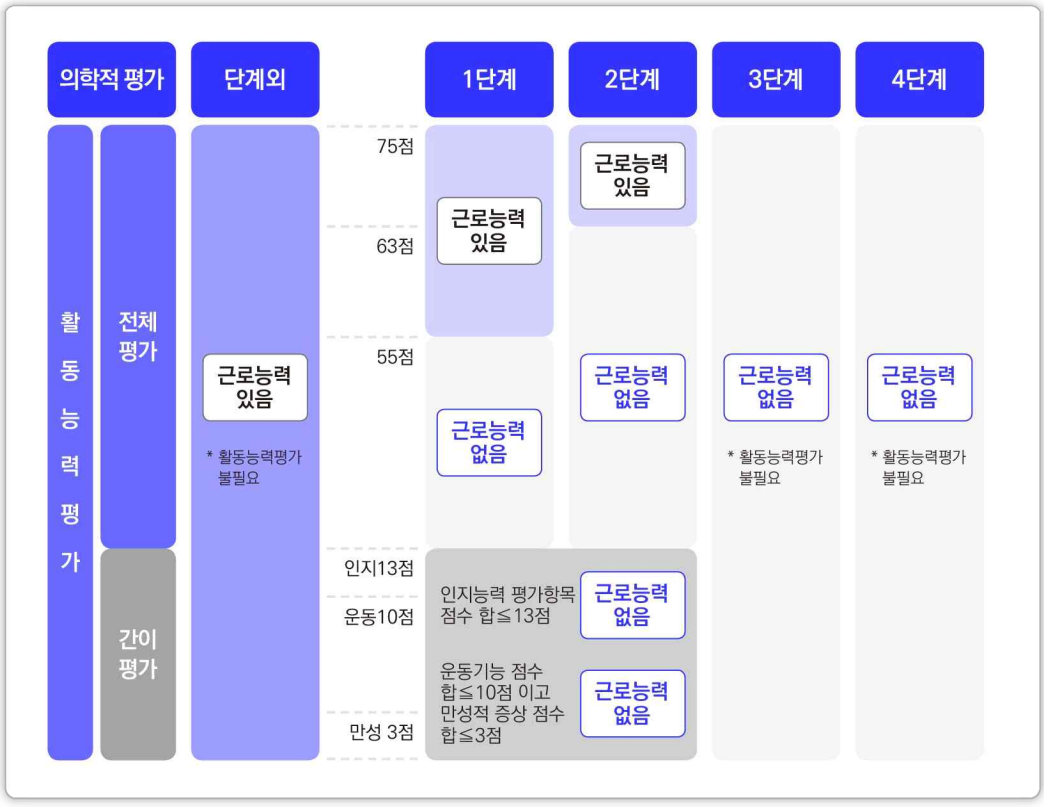

- 의학적 평가 단계 외 :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활동능력평가 불요)
- 의학적 평가 1~2단계 : 활동능력평가 결과 55점(1단계), 63점(2단계) 이하인 경우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

  ※ 간이평가 결과 운동기능 점수 합이 10점 이하이고 만성적 증상 점수 합이 3점 이하인 경우나, 인지능력 평가항목 점수 합이 13점 이하인 경우 평가 조기 종료
- 의학적 평가 3~4단계 :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활동능력평가 불요)

10 근로능력평가 결과 수신 및 판정 (자자체 수행)

(1) 근로능력평가 결과 수신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의학적 평가 및 활동능력 평가 등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행복e음을 통해 시·군·구로 통보
- 시·군·구는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확인, 통보 받은 내용을 토대로 근로능력판정 실시

※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 결과대로 판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시·군·구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급여의 특례를 심의·의결할 수 있음

(2) 근로능력판정 및 통지

- 시·군·구에서는 근로능력판정 결과를 서면(붙임 '근로능력판정 결과서')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 근로능력평가 결과, 단계외 또는 평가 반려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재판정 등 불복절차 안내

(3)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추가서류의 보완 등을 거쳐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을 안내

  – 국민연금공단은 지자체 요청 시 이의신청에 따른 검토의견서(의학적 평가 판정 관련 질환별 구체적 사유 등)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11 근로능력판정의 유효기간 (지자체 수행)

(1)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그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 다만, ❶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 고착 및 2~4단계 비고착인 경우 그 유효기간을 2년, ❷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이며 고착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음

- 고착이란 질병이나 부상의 의학적 상태가 2년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의학적 상태의 호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 또는 부상의 특성, 중증도, 치료 경과, 치료의 종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정

※ 평가 의뢰된 2가지 질환 중 한 가지 질환만 고착으로 평가된 경우에도 고착 유효기간 적용 가능

<근로능력평가 판정 유효기간>

호전가능성	의학적 단계	판정 유효기간
고착	1단계	2년
	2~4단계	3년
비고착	1단계	1년
	2~4단계	2년

(2) 유효기간 설정 방법(시점)

- 신규평가 대상자의 경우
  - 판정일부터 유효기간 설정

- 정기평가 대상자의 경우
  - 유효기간 만료 전 판정 시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유효기간 설정
  - 유효기간 만료 후 판정 시 판정일부터 유효기간 설정

※ 신청인 귀책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후 판정시(평가 기간 '근로능력 없음' 유지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유효기간 설정

- 재판정(평가) 대상자의 경우
  - 재판정 결과 '근로능력 없음'으로 되었을 경우 당초의 '근로능력 있음' 판정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설정

<유효기간 설정 시점>

구분		유효기간 설정 시점
신규평가		판정일
정기평가	유효기간 만료전 판정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유효기간 만료후 판정	판정일
재평가 ※ 재판정 결과 '근로능력 없음' 판정인 경우		당초의 「근로능력 있음」 판정일

※ 신청인 귀책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후 판정시(평가 기간 '근로능력 없음' 유지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유효기간 설정

(3) 기존 평가질병에 다른 질병을 추가하여 신규평가 의뢰 시 기존 평가결과 인정 범위

- 지자체에서 수급자에게 근로능력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60일까지 평가 결과 인정
- 지자체에서 기존 평가질병에 다른 질병을 추가하여 신규평가 접수 시
  - 지자체에서 수급자에게 기존 질병의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인지 확인 후 「기타요청」 란에 「기존질병을 통보한 일자」와 「평가생략 대상*」이라고 반드시 기재한 후 의뢰

* 평가생략 대상: 기존 질병에 대해 추가로 제출한 서류가 없는 경우로 스캔입력 생략

※ 자립지원과-4090(2020.09.01.) "기존 근로능력평가 결과 인정기준 개선 안내"

12 유효기간 만료예정자 관리 (지자체 수행)

(1)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 70일전에 행복e음에서 안내 대상자를 확인,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이 만료예정임을 통보

- 시·군·구(통합조사관리팀에서 총괄)
  - 유효기간 만료 70일전에 행복e음의 변동관리의 '유효기간 만료예정' 메뉴에서 대상자 생성(매일)
  - 유효기간 만료예정자 명단을 추출, 3일 이내에 읍·면·동에 제공(시·군·구별 업무 여건 따라 시·군·구에서 처리 가능)
  - 기존 수급자 중 신규평가 대상자를 인지한 경우 해당 읍·면·동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동 내용을 해당 읍·면·동에 통보

- 읍·면·동
  - 읍·면·동에서 안내 시 유효기간 만료예정자에게 해당 구비서류를 만료일 3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안내(20세 미만 등 일반 확인조사 대상은 변경예정사항을 안내)
  - 근로능력판정 대상자가 구비서류(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의료급여산정특례신청서 등)를 제출하는 경우, 행복e음에 접수·등록하고 시·군·구로 전달

- 다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

(2) 판정의 유효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판정은 신규평가와 동일하게 국민연금공단에 평가(정기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판정

(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효기간 초과' 대상자로 변동됨('근로능력 있음' 처리 대상)

(4) 유효기간 만료 시 처리방법

- 근로능력평가 자료를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 제출하였으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까지 평가 미완료의 경우
  - 판정 완료일까지 '근로능력 없음' 유효기간 연장 처리

- 근로능력평가 자료를 유효기간 만료 30일 미만~만료일 이전 제출하였고,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까지 평가 미완료의 경우
  -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판정 완료일까지 '근로능력 없음' 유효기간 연장 처리
  - 그 외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근로능력 있음' 처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앓거나 골절 치료를 위해 고정(깁스, 부목 등)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등 일시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일시적인 근로무능력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최대 3개월) '근로능력 없음' 유효기간 연장

- 질병, 부상 등으로 3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의 경우, 일반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을 검토 후 해당 보장기관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 일시적인 근로무능력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최대 6개월) '근로능력 없음' 유효기간 연장

(5) 유효기간 만료 도래하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평가 유예 방법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대상자가 아래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근로능력평가 의뢰 없이 종전 판정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평가유예 처리

다음 조건 모두 만족 시 평가 유예대상으로 평가 없이 유효기간 연장처리
① 직전 근로능력평가에서 장애유형과 상응하는 질환유형으로 평가하여 의학적 평가 결과가 2~4단계이면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 받음 ②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등록 장애유형을 유지하고 있음

<평가질환별 상응 장애유형표>

근로능력평가질환(11개)	장애 유형(13개)	
근골격계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장애
신경기능계	뇌병변장애	
	뇌전증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기능장애
정신신경계	정신장애	
감각기능계	시각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심혈관계	심장장애	
호흡기계	호흡기장애	
소화기계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비뇨생식계	신장장애	
	장루 및 요루장애	
내분비계	-	
혈액 및 종양질환계	-	
피부질환계	안면장애	

13 근로능력판정의 조정(직권평가) (지자체 수행)

(1)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를 거쳐 근로능력판정 결과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으나 수급자의 판정상태가 변화되어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시 근로능력판정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가능

- 근로능력 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 이를 해당 수급자에게 서면통지
- 해당수급자는 판정상태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에서는 이를 기초로 근로능력판정 조정 여부 판단을 위한 근로능력 평가 의뢰 여부를 결정

- 근로능력판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시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평가를 의뢰

(2) 수급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 할 수 있음

- 직권으로 의뢰한 공단의 판단에 반하는 결정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명확한 사유 및 권리구제 절차 안내 필요

14 근로능력판정에 따른 권리구제(재판정)

(1)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근로능력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재판정 신청서'와 추가서류를 시·군·구에 제출

※ 재판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 근로능력평가를 위해 제출했던 서류(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등) 외에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증빙하는 추가서류를 반드시 제출

(2)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에서는 재판정 신청서와 추가서류를 행복e음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평가(재평가)를 의뢰

※ 재판정 신청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추가서류는 근로능력판정 구비서류에 한함

(3) 국민연금공단에서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당초 근로능력평가에 참여했던 직원 및 자문위원을 배제하고 평가 진행

- 공단은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평가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서류 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에 시·군·구에 통보

(4) 시·군·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통보 받은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로능력 재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5) 재판정 결과에 대해서도 수급자가 불복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6)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위의 절차와 별도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

【근로능력판정 권리구제 업무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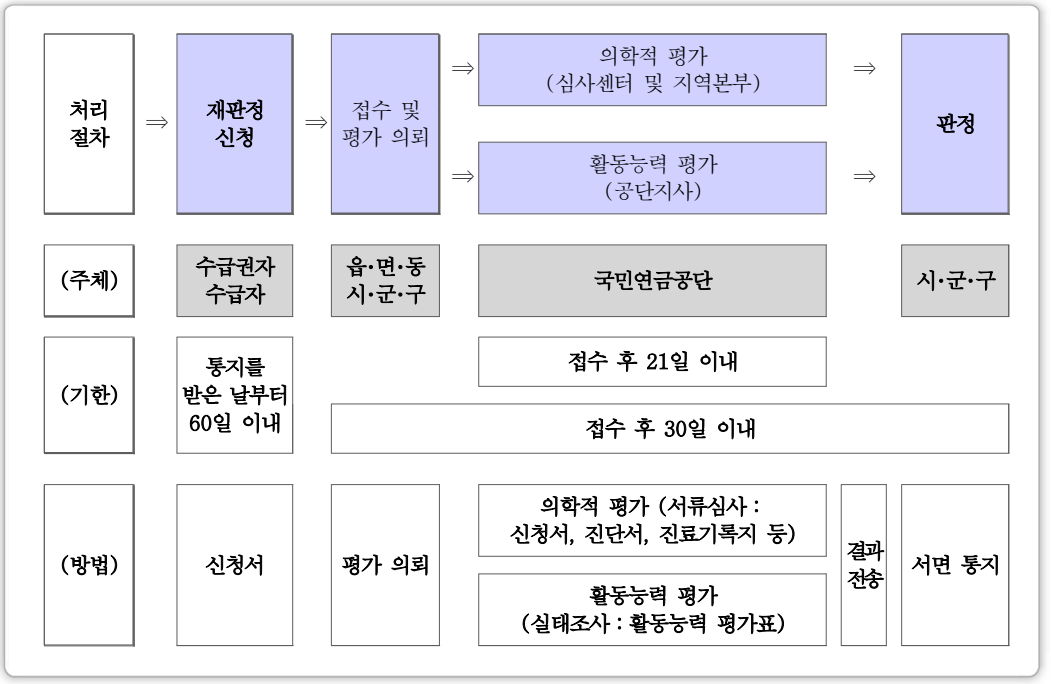

제 4 장

근로능력평가

4-1. 근로능력평가 개요

4-2. 의학적 평가

4-3. 활동능력 평가

4-1 근로능력평가 개요

1 근로능력평가 대상

(1)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임

(2) 위 수급자 중에서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등을 시·군·구에 제출한 사람

2 근로능력평가 항목

(1) 의학적 평가

-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사본 등을 검토하여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질환별로 단계를 결정

(2) 활동능력 평가

- 국민연금공단이 평가대상자에 대한 면담 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활동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총점 75점)
- 활동능력 평가는 의학적 평가 결과가 1~2단계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실시
- 활동능력 간이평가 결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능력 없음' 적용
  - 신체능력 평가항목 중 운동기능이 10점 이하이고 만성적 증상이 3점 이하
  - 인지능력 평가항목 점수의 합이 13점 이하

4-2 의학적 평가

1 의학적 평가의 목적

-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 정도를 평가

2 의학적 평가의 적용범위 및 평가대상 질환

(1) 적용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수급자에 대해 근로능력판정을 위한 의학적 평가를 하는 때에 적용함

(2) 평가대상 질환

- 근골격계, 신경기능계, 정신신경계, 감각기능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생식계, 내분비계, 혈액 및 종양질환계, 피부질환계 등 11개 질환군

3 평가방법

(1) 질병·부상 고착 평가

- 질병이나 부상의 의학적 상태가 2년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고착으로 평가
  - 의학적 상태의 호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 또는 부상의 특성, 중증도, 치료경과, 치료의 종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2) 평가대상 질환별 단계는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의학적 평가기준(질환별 평가기준)에 따라 결정

(3) 동일한 평가대상 질환 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하며, 각기 다른 평가대상 질환별 질병이 2종류 이상 있는 경우 평가대상자의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2개의 질병에 대해서만 평가 실시

- 다만, 다음의 평가대상 질환유형 내의 질병의 경우에는 별도 대상으로 보아 평가 가능
  - 근골격계 질환유형 내 <상·하지> 및 <척추>
  - 감각기능계 질환유형 내 <청각>, <평형> 및 <시각>
  - 소화기계 질환유형 내 <간질환> 및 <위장질환>
  - 피부질환계 질환유형 내 <피부질환> 및 <외모 및 결손질환>

(4) 11개 평가대상 질환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질병이나 부상이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쳐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 평가 기준을 기초로 해당 질병이나 환자의 상태와 가장 근접한 평가대상 질환 중 한 개를 선택하여 그 단계를 평가할 수 있음

단 계	평 가 기 준
1단계	근로수행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치료 또는 관찰이 필요한 경우 근로수행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주기적인 치료중인 경우
2단계	근로수행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지속적인 치료중이나 증상이 존재하는 경우
3단계	근로수행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수행능력에 제한이 따르는 경우
4단계	근로수행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수행능력에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경우

※ 적용원칙 이외에 질병이나 부상이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쳐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기 기준을 기초로 그 단계를 평가 할 수 있음

(5) 국민연금공단은 의학적 평가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의뢰된 평가대상 질환이나 질병 등과 다르게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른 평가대상 질환 및 질병 등으로 평가할 수 있음

(6) 평가대상 질병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에는 “단계외”로 평가함

4 평가 결과 합산

- 2종류의 질병이 있는 경우 2종류의 질병 중 단계가 높은 질병의 단계보다 1단계 상향 평가

5 의학적 평가 자문위원 활용

(1) 국민연금공단은 평가대상 질환의 상태 및 의학적 단계 결정, 질병·부상 고착 평가, 직접진단 등을 위해 의학적 평가 자문위원을 구성·활용 가능

(2) 제출된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등을 통해 정확한 의학적 평가가 어려울 경우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직접진단 가능

(3) 의학적 평가 시 다음 사항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운영 가능

- 의학적 평가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의학적 평가 단계 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항
- 질병의 특성,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 및 복합질환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
- 그 밖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의학적 평가와 관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6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1) 자료보완

- 국민연금공단은 근로능력평가를 위해 전송된 서류를 최대한 이용하되, 심사과정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에 자료보완 요청 가능
- 자료보완 시 주요 요청자료
  - 환자병력 및 진료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기록지 등
  - 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결과지

- 초음파, CT 등 영상 자료
- 기타 의학적 평가 관련 단계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

- 자료보완의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로 하되, 자료의 성질, 확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정

- 시·군·구 및 평가 대상자가 보완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기재하여 요청

- 보완하는 자료가 의학적 자료임을 감안, 국민연금공단은 시·군·구에 자료보완을 요청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자에게 자료보완 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

- 검사예약 대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출기한 내에 자료를 보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제출 기한을 연장 처리하고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통보

- 동행서비스를 실시한 평가대상자가 거동불편 등으로 보완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평가대상자의 동의 및 위임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진료기록지 등 평가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제공 가능

- 보완요청 자료 접수 및 미제출시 처리 방법
  - 자료보완 제출기한이 만료되었으나 보완이 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기한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시·군·구로 요청
  - 2회의 자료보완 요청(제출촉구 포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평가 의뢰를 반려 가능

(2) 직접진단

- 국민연금공단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정확한 의학적 평가가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정한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직접진단을 시행할 수 있음

- 직접진단 대상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 상태와 진료기록지 등의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
  - 자문회의에서 직접진단 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등

- 심사과정에서 직접진단이 결정되면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시·군·구에 통보하고, 평가대상자에게 직접진단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안내
  - 국민연금공단은 직접진단 평가의 일시, 장소를 평가대상자 및 시·군·구에 통지
- 직접진단의 실시
  - 국민연금공단은 직접진단을 위해 필요시 시·군·구(읍·면·동)에 협조를 요청
  - 국민연금공단은 자문위원이 직접진단 평가대상자를 대면하여 질병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직접진단 완료시 이를 시·군·구에 통보
  - 직접진단 평가를 2회 이상 불응한 경우에는 평가의뢰를 반려할 수 있음

【직접진단 업무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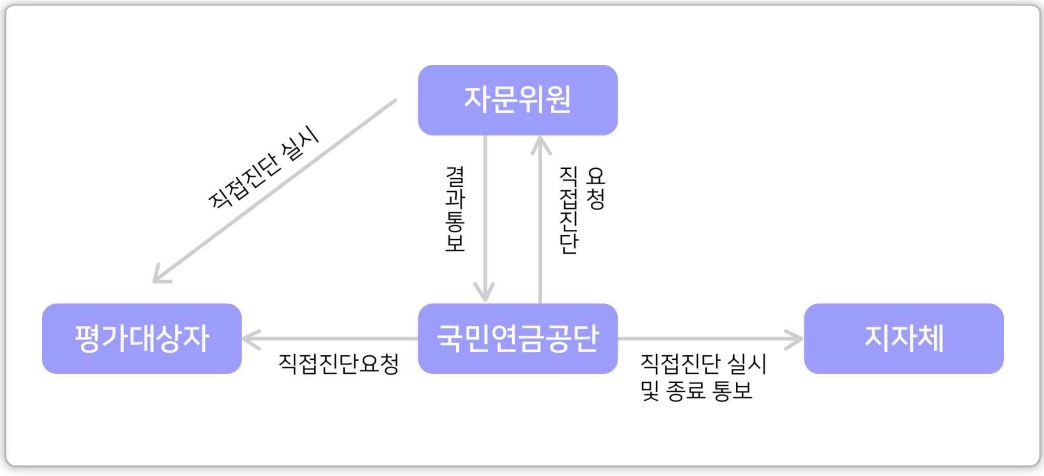

4-3 활동능력 평가

1 활동능력 평가의 목적

-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능력 정도를 평가하기 위함

2 활동능력 평가의 적용범위 및 평가항목

(1) 적용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수급자에 대해 근로능력판정을 위한 활동능력 평가를 하는 때에 적용함

(2) 평가항목

- 팔뻗기, 쪼그려 앉기, 평지이동, 층간이동, 물건 들고 옮기기, 입·통원, 약복용, 건강관리, 자기관리, 의사소통, 감정조절, 대처능력, 공간지각력, 음주문제, 자격증 보유, 근로경험, 의지력, 연령, 학습능력 등 19개 항목

【활동능력 평가 항목별 정의】

구 분		평 가 항 목	정 의
신체능력 (간이평가 항목)	운동기능	1. 팔뻗기	상지부위를 구성하는 '세 개의 관절인 어깨(shoulder), 팔꿈치(elbow), 손목(wrist)'의 기능과 관절, 그리고 손가락(thumb & finger)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
		2. 쪼그려 앉기	하지부위를 구성하는 '세 개의 관절인 고관절(hip), 무릎(knee), 발목(ankle)의 기능과 근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3. 평지이동	얼마나 오래 외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정 의
		4. 층간이동	계단을 오르내리는 데 있어 전반적인 어려움 정도를 평가
		5. 물건 들고 옮기기	자신의 한 손 또는 양손을 사용하여 물건을 다루고, 집고, 조작하고 풀어놓을 수 있는 정도를 평가
	만성적 증상	6. 입·통원	최근 1년 내 병원진료여부 및 기간을 질문하며 면접평가 시 증빙서류를 요청하여 평가
		7. 약복용	평가일 기준 1일전부터 1주간의 약복용 횟수를 질문하며 면접평가 시 증빙서류를 요청하여 평가
인지능력 (간이평가 항목)	자립성	8. 건강관리	자기 스스로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을 포함해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는 정도를 평가
		9. 자기관리	자기 스스로 상황·환경·계절변화에 적합한 용모 및 복장을 관리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
	사회성	10. 의사소통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11. 감정조절	기분 나쁜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12. 대처능력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를 잘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
		13. 공간지각력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다른 대상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음주	음주문제	14. 음주문제	음주문제로 인해 근로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정도를 평가
영향요인	자격증	15. 자격증보유	취득한 자격증의 소지 유무 및 개수로 평가
	근로경험	16. 근로경험	최근 1년 내에 근로경험 유무를 평가
	구직동기	17. 의지력	실직이나 미취업상태에 있는 개인이 직업 또는 직장을 찾기 위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능력을 평가
	연령	18. 연령	활동능력평가 조사표상의 연령(만 나이)로 확인하여 평가
	학습능력	19. 학습능력	세 가지 기능(읽기, 쓰기, 사칙연산)가능성 정도로 평가 대상자의 기초학습 활용 능력을 확인하여 평가

3 평가방법

(1) 평가는 간이평가 → 전체평가 순서로 하되,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름

(2) 면접평가를 원칙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관찰평가, 상황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른 점수를 부여

구 분	평 가 방 법
면접평가	평가항목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관찰평가	평가장소에서 평가대상자의 행동, 언행, 태도 등의 관찰을 통해 평가
상황평가	초기 상담 과정에서 획득하거나 또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얻은 주거 현황, 건강 상태, 가족과의 관계 등 상황정보에 근거하여 평가

(3) 평가척도

- 각 평가항목의 평가기준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최종적으로 19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4.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개별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방법은 공단이 정한다.

4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구분		정의	평가항목		점수구성
신체 능력 (간이 평가 항목)	1 운동기능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1	팔뻗기	1점 ~ 4점
			2	쪼그려 앉기	1점 ~ 4점
			3	평지이동	1점 ~ 4점
			4	층간이동	1점 ~ 4점
			5	물건 들고 옮기기	1점 ~ 4점
	2 만성적 증상	판정 신청한 질환 외 보유 중인 만성질환 여부 및 상태	6	입·통원	1점 ~ 5점
			7	약복용	1점 ~ 5점
인지 능력 (간이 평가 항목)	3 자립성	건강한 심신의 유지 및 자기관리 할 수 있는 능력	8	건강관리	1점 ~ 5점
			9	자기관리	1점 ~ 5점
	4 사회성	타인과 어울려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10	의사소통	1점 ~ 5점
			11	감정조절	1점 ~ 5점
			12	대처능력	1점 ~ 5점
			13	공간지각력	1점 ~ 5점
음주	5 음주문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	14	음주문제	1점 ~ 3점
영향 요인	6 자격증	노동시장 취업을 위한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15	자격증 보유	1점 ~ 2점
	7 근로경험	취업 이력을 통한 근로활동 가능 여부	16	근로 경험	1점 ~ 2점
	8 구직동기	전반적인 평가과정에서 보이는 성실성 및 책임감 정도	17	의지력	0점 ~ 2점
	9 연령	연령에 따른 취업가능 여부	18	연령	1점 ~ 3점
	10 학습능력	학습능력에 따른 취업가능 여부	19	학습능력	1점 ~ 3점

제5장

근로능력평가 지원제도

5-1. 동행서비스

5-2. 평가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5-3. 자료보완 비용지원 서비스

5-1 동행서비스

1 동행서비스 내용

(1) 읍·면·동 담당직원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질환·알코올 문제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평가대상자와 동행하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을 지원하는 서비스

(2) 공단은 동행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물적·인적 자원 지원

※ 동행서비스 제공 주체는 지자체이며, 공단은 적극적으로 지원업무 수행

2 동행서비스 대상자

(1) 질병, 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

(2) 정신질환, 알코올의존 등으로 진단 및 치료 등이 어려운 사람

3 동행서비스 제공방법

(1)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읍·면·동에 동행서비스 신청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신청 대행 가능
- 읍·면·동이 직권으로 동행서비스 제공 가능

※ 동행서비스는 반드시 본인이 동의해야 가능함

(2) 지자체에서는 동행서비스 신청서 접수 후 동행서비스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고, 동행서비스 대상자로 결정시 행복e음에 등록

- 서비스 대상자, 내용, 시간, 방문 장소 등을 확정
-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알코올 상담센터 등에 협조 요청하여 원활하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
- 동행서비스 제공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과 사전 지원내용, 장소, 시간 등의 협의 후 지원요청 가능

5-2 평가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1 발급대행 서비스 내용

- 자료보완 요청된 평가 자료에 대해 평가대상자의 동의 및 위임에 의해 국민연금공단이 대리인의 위치에서 직접 평가대상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확보하는 서비스임

2 평가자료 발급대행 대상자

- 질병, 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어려워 동행서비스를 받은 사람으로서 자료보완 요구된 사람

3 평가자료 발급대행 방법

(1) 원칙적으로 자료보완은 평가대상자 본인이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며, 예외적으로 동행서비스 실시한 사람 중 자료보완 요구된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제공

(2) 신청인이 거동불편 등으로 보완요구자료 제출이 곤란하여 시·군·구(읍·면·동)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평가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지사업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서비스를 제공

(3) 평가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개별 법령에 의해 실시하는 제도가 아니라 의료법상의 대리인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도 대리인의 발급 요건만 구비하면 평가자료 발급대행 가능

- 다만, 발급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
- 평가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동의서(2018.9.27. 개정), 위임장(2017.6.21. 개정)

(4) 평가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제공 방법(국민연금공단)

-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등 요청에 관한 공문 및 서류발송
- 우편/팩스 또는 출장을 통한 발급대행으로 관련 평가자료를 확보하여 국민연금공단 의학적 평가 관할지에 제출

4 평가자료 발급대행 대상 자료

(1) 병력 및 진료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기록지 등

(2) 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결과지

(3) 초음파, CT 등 방사선 사진 등 영상 자료

※ 진단서, 소견서는 본인에게 직접 발급되어야 하므로 제외

5 평가자료 발급대행 신청 및 제공

- 평가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제출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신분증 사본

5-3 자료보완 비용지원 서비스

1 자료보완 비용지원 서비스 내용

-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료보완(직접진단 대상자 포함)을 요청하고, 그 자료보완을 위해 추가로 진단비, 검사비 및 발급비용 등이 소요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자료보완 비용지원 대상자

-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요청한 자료보완에 대해 발급 비용을 지출한 대상자 중 비용지원을 희망하는 자

3 자료보완 비용지원 기준

(1)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자료보완에 소요된 총비용 지원 가능
  -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보완비용지원액 상한선은 회계연도 기준(1.1~12.31)으로 적용하고, 초과분은 본인 부담

(2)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배정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당해 연도 지원 불가(단, 다음연도 예산 배정시 지원 가능)**

4 자료보완 비용지원 절차

① 자료보완 비용지원 신청 · 접수	② 비용지원 요청	③ 비용지원 등록	④ 비용 지급
영수증 및 관련 구비서류 등 접수	신청인이 제출한 구비서류 등 전자문서로 요청	구비서류 등에 대한 수량과 금액, 지급방법 입력	비용지원 대상자에게 비용 지급
지자체	지자체	국민연금공단(지사)	국민연금공단(지사)

5 업무처리 방법

(1) 시·군·구에서는 자료보완 비용지원과 관련된 필수 및 추가 구비서류 등 징구·보관 후 국민연금공단(지사)으로 전자문서 요청

(2) 세부 업무처리 방법

- **(신청인 범위)** 평가 대상자 본인

※ 전달문서(사자청구)인 경우 본인의사 유선확인 필요. 단, '신용불량 증빙자료'가 없는 신용불량자는 평가대상자 본인이 직접 내방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지급가능 계좌 범위)** 평가 대상자의 본인명의 계좌

– 단, 평가 대상자 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신용불량자로 본인명의 계좌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가족 **계좌*** 및 주민센터 계좌**로 지급가능

* (가족명의 계좌 범위) 평가 대상자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 근로능력평가 자료보완 비용지원 서비스 업무지침 개선 안내[자립지원과-3265(2021.7.9.)]

- **필수구비서류**

■ **(공통)** 완납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 내역서*, 거래처등록내역서**

* **신청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진료비 세부 내역서' 제출 생략** 가능[근로능력평가부-377(2020.9.11.)]
** 주민센터 계좌 신청 시 주민센터 고유번호증 및 통장사본으로 갈음
지자체에 「거래처 등록 내역서」 양식 배포함 [자립지원과-3265호(2021. 7. 9.)]

■ **가족 계좌 이용 시 추가 구비서류**

–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빙서류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용불량자) 가족관계증빙서류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신용불량 증빙자료(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지자체 공문서*로 확인)

* **공문서 포함 사항** : 신청인(=평가대상자), 지급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예금주 연락처, 평가대상자와 예금주의 관계, 타인명의 계좌 지급 신청사유 등

■ **주민센터 계좌 이용 시 추가 구비서류**

– 주민센터 계좌 이용신청서, 가족관계를 확인(가족이 없음)할 수 있는 서류, 주민센터 고유번호증(최초 1회), 주민센터 통장사본(최초 1회), 신용불량 증빙자료(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지자체 공문서로 확인) 및 비용지원 현금수령증

● **(서류확인)**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및 영수증 등 확인

– 영수증에는 발급기관, 발급대상자 인적사항, 발급내역(서류명, 수량, 금액 등), 발급일자, 기관 직인 등이 반드시 표출되어야 함

● **(발송방법)** 자료보완 서류는 기존과 동일하게 행복e음에 스캔하여 등록 후 국민연금공단에 전송하며,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및 CD자료 등은 등기우편 발송

● **(유의사항)**

– 비용지원은 연간 1인당 10만원 한도에서 이루어지고, 국민연금공단의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 비용지원이 어려움을 보완자료를 제출받은 때 반드시 신청인에게 안내

– 주민센터 계좌 이용시 신청자에게 현금 지급 후 비용지원 현금수령증 보관